

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·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폐지조례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출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가. 제출일자 : 2001년 5월 3일

나. 회부일자 : 2000년 5월 3일

3. 제안 이유

- 농지의 양어장 전용허가시 제출토록 되어 있던 양어장 적지판정서와 민원인이 수질분석 신청시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 운영하여 왔으나
- 정부의 행정간소화 시책에 의하여 양어장적지판정서 제출이 생략되었고 수질분석은 수수료 징수로 인하여 민원인이 기피하고 있으며
- '98년부터 현재까지 수수료 징수실적이 전혀 없어 이후부터는 시험의뢰자에게 무료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본 조례는 폐지하고자 함

4. 주요 골자

-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·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폐지

5. 검토 의견

- 충청북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·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는 내수면양식장의 적지 여부와 수산용수의 적합 여부를 의뢰하는 자에게 시험·조사 및 분석 결과를 알려주고 이에 따른 수수료를 징수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,
- 내수면양식장의 적지여부 및 수산용수의 적합 여부를 의뢰하려는 자가 수수료 징수로 인하여 이를 기피하고 있어 '98년 이후 지금까지 수수료 징수 실적이 전무한 상태이고, 본 조례폐지 이후는 수수료 징수 없이 시험·조사 및 분석결과를 알려줄 계획이므로 본 조례를 더 이상 존치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됨